

#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1년 8월 17일

나. 회부일자 : 2001년 9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01. 9. 19)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위생과장 송 기 성)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99. 8. 9)에 따라 환경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 개정안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 체계를 구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마련(안 제5조)
- 감량의무이행 계획신고서 제출기일 연장 (안 제6조)
-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 규정 삭제 (안 제9조)
- 납부기한 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미납시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안 제14조)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신청절차 마련 (안 제1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신 덕 찬)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99. 8. 9 개정되고 환경부 개정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부 조항을 순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능률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1. 6. 27부터 동년 7. 16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하는 안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제19조로 구성되어 전면 개정 요구된 안으로서 제2조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있어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에서 2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 수분량을 40%미만으로 정의하였으며,

제6조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주민편익차원에서 완화하였고,

제9조 중 공동주택에 대해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악취등 심각한 민원문제로 삭제하고,

제10조 중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용기에 담아 운반토록 하고 세척이나 소독으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 가산금 규정을 삽입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수수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시 투명성을 위해 제15조 부과액 조정신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개정준칙안을 통보 받아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 구의 조례 역시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행정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을 일부 완화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 타 사 항 : 없음**

#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1년 9월 19일

제출자 : 김용희 의원 외 3인

## 1. 수정사유

-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명시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제11조 제1항의 내용 중 다음 내용을 수정함.
  - “자원화하는 시설을”을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로 수정

##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11조 제1항의 내용 중 다음 내용을 수정함.
  - “자원화하는 시설을”을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로 수정

##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1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u>자원화하는 시설을</u>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민간 기업과 공동 투자 추진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한다.</p>	<p>제11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 ----- <u>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u> ----- ----- ----- -----</p>

##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생활 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여과 과정 없이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음으로 인해서 봉투에 물이 고여 있거나 봉투에서 물이 흐르는 상태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 4 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재활용가능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 5 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6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 6 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 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장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8 조(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재질·제작·공급·판매 등)** ①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별하여 “별표 2”와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제작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④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의 종류·재질·제작·공급·판매·관리·판매인 준수사항·지정해제 등은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 9 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10 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민간기업과 공동투자 추진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계약에 의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2 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 및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 13 조(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①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2조 규정에 의거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수수료 납부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마감일은 당월의 말일로 한다.

#### 제 14 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 15 조(부과액 조정신청)

①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준용규정)①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서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에 따른다.

제 18 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령·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에 따른다.

제 19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u>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u> 등을 말한다.</p> <p>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u>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u>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후단신설&gt;</p> <p>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u>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u>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p> <p>4.~5.(생략)</p> <p>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u>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u> 말한다.</p> <p>7.(생략)</p> <p><b>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b> ① <u>법 제15조의</u>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p>	<p><b>제2조(정의)</b> ----- -----</p> <p>1. ----- ----- <u>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u> ----- -----</p> <p>2. ----- ---- <u>규칙 제6조 별표4 제3호 라목에서</u> -- ----- .</p> <p><u>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의</u> 규정에 의한 <u>일반음식점 중</u> <u>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써</u> <u>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u> <u>주로 하지 아니하는</u> <u>영업에</u> <u>해당하는</u> <u>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u></p> <p>3. ----- ----- <u>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u> <u>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u> <u>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u> <u>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u> <u>재활용이 용이하도록</u> <u>감량하는 것을</u> <u>말한다.</u></p> <p>4.~5.(현행과 같음)</p> <p>6. ----- ----- -- <u>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u> <u>말한다.</u></p> <p>7.(현행과 같음)</p> <p><b>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b> ① ----- ----- -----</p>

현행	개정안
<p>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u>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u>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u>날짜에</u>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2. (생략)</p> <p><b>제5조(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b>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u>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p>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u>을 설치·운영하는 자, <u>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수·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u></p> <p>2. &lt;신설&gt;</p>	<p>1. ----- <u>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u> ----- ----- ----- <u>일시에</u> ----- ----- .</p> <p>2. (현행과 같음)</p> <p><b>제5조(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b> ----- ----- ----- <u>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u> ----- ----- .</p> <p>1. ----- <u>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u> 다만, <u>규칙 제6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p> <p>2. <u>감량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2.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p> <p>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p> <p>4. 제3호의 ----- ----- -----</p>
<p>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2. (생략)</p>	<p>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 -----</p> <p>1. ----- ----- -----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7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생략)</p> <p>②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③ ~ ⑤(생략)</p>	<p>제7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현행과 같음)</p> <p>② ----- ----- -----</p> <p>-----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③ ~ ⑤(현행과 같음)</p>
<p>제8조(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재질·제작·공급·판매 등)</p>	<p>제8조(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재질·제작·공급·판매 등)</p>

현행	개정안
<p>①(생략)</p> <p>②음식물쓰레기 <u>전용봉투는 투명·반투명</u> 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제작한다.</p> <p>③ ~ ④(생략)</p> <p><b>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b> ①구청장은 <u>법 제16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u>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 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구청장은 <u>법 제16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u>동조 제2항의</u>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u>법 제63조제2항제3호의</u>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①(현행과 같음)</p> <p>② ----- <u>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u> -----</p> <p>③ ~ ④(현행과 같음)</p> <p><b>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b> ① ----- <u>법 제12조의</u> -----</p> <p>-----</p> <p>-----</p> <p>-----</p> <p>-----</p> <p>-----</p> <p>-----</p> <p>② -----</p> <p>-----</p> <p>----- <u>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u></p> <p>③ ----- <u>동조 제1항 및 제2항의</u> 규정에 의하여 -----</p> <p>-----</p> <p>-----</p> <p>----- <u>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u>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b>제10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b></p> <p>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u>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u> 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u>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u>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후단신설〉</p> <p>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u>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수·축산가 등에 위탁</u>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0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b></p> <p>① ----- ----- <u>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u> 하여야 한다.</p> <p>② ----- ----- <u>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u> ----- -----</p> <p><u>다만, 제7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p> <p>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④(삭제)</p>

현행	개정안
<p>제11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민간기업과 공동투자 추진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한다.</p> <p>②(생략)</p>	<p>제11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 ----- 자원화하는 시설을 ----- ----- ----- -----</p> <p>②(현행과 같음)</p>
<p>제12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③(생략)</p> <p>④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납으로 납부마감일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마감일은 당월의 말일로 한다.</p>	<p>제12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③(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p>〈신설〉</p>	<p>제13조(납부고지 및 징수방법)</p> <p>①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2조 규정에 의거 세외 수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②수수료 납부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 마감일은 당월의 말일로 한다.</p>
<p>〈신설〉</p>	<p>제14조(가산금과 납입독촉)</p> <p>①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②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5조(부과액 조정신청) ①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p>

현행	개정안
<p>제13조(생략)</p> <p>제14조(생략)</p>	<p>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p> <p>〈신설〉 제16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신설〉 제17조(준용규정) ①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 서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p> <p>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제18조(현행 13조와 같음)</p> <p>제19조(현행 14조와 같음)</p>